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76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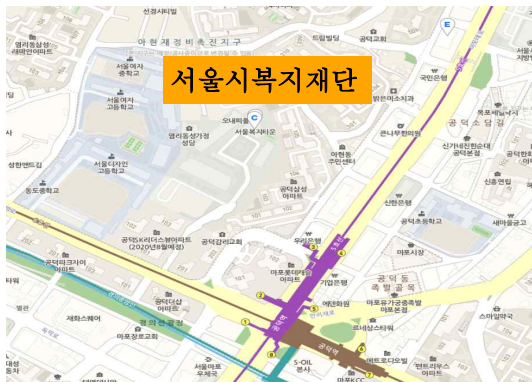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복지재단
 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
 - 규모 : 건물면적 967.12㎡, 건물연면적 10,830.25㎡
 - 위치도



위치도



건물현황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례 :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
- 복지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
-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
-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사회서비스 품질관리
-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

다. '21년 총 소요예산(안) : 47,007,241천원

라. '21년 예산 산출근거(안)

- 사업비 : 30,379,053천원
- 일반관리비(인건비, 운영비 등) : 16,628,188천원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,
-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, 지역·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,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정송희 (☎ 2133-7318)